

January 29, 2024

중국 기업결합 신고기준 변경

중국 국무원(중앙정부)은 2024년 1월 26일 개정 <국무원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관련 규정>(이하 “**신 규정**”)을 공포하였습니다. 신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이로써 2008년 8월 1일 <반독점법> 시행시부터 적용되어 왔던 기업결합 신고기준이 중대하게 변경되었습니다.

참고로 신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안은 2022년 6월 27에 일반 대중에 공개되었고 그 이후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. 위 입법예고안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번 신 규정에 반영되었으나, 소위 킬러인수(killer acquisition)¹를 특별히 규제하기 위한 신고기준에 관한 내용은 신 규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

신 규정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.

- (i)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전세계 매출액 합계가 **120억 위안**(과거 기준은 **100억 위안**)을 초과하고, 그 중 2개 이상의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각각의 중국 내에서의 매출액이 각각 **8억 위안**(과거 기준은 **4억 위안**)을 초과할 경우, 또는
- (ii)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에서의 매출액 합계가 **40억 위안**(과거 기준은 **20억 위안**)을 초과하고, 그 중 최소 2개 이상의 사업자 각각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에서의 매출액이 각각 **8억 위안**(과거 기준은 **4억 위안**)을 초과할 경우.

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전세계 매출액의 합계	100억 위안에서 120억 위안으로 상향 ↑
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중국내 매출액의 합계	20억 위안에서 40억 위안으로 상향 ↑
각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중국내 매출액	4억 위안에서 8억 위안으로 상향 ↑

따라서, 2024년 1월 26일 이후 중국에서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경우, 신 규정에 따라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. 특히, 최근에 합병, 자산 또는 지분 양수도, 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상하는 경우(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확정 계약-definitive agreement-을 이미 체결하였더라도 중국 내 기업결합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포함), 신 규정에 따라 중국 내 기업결합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다시 점검하여 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(예를 들어 과거 기준에 따라 신고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던 경우에도, 신 규정의 기준에 따라 신

1 Killer acquisition이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대기업이 성장 잠재력이 큰 신생 기업을 인수해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. 이와 같은 거래는 시장지배력이 큰 기존 기업들이 잠재적인 경쟁사업자를 미리 제거하여 시장 경쟁이 저해돼 상품 질이 하락하거나 혁신 노력이 감소하는 등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 입법예고안에서는 킬러인수의 경우를 상정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: (i)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 중 어느 한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 매출액이 1,000억 위안을 초과하고, (ii) 피합병 당사자 또는 지분인수, 자산인수, 계약 등 방식을 통해 지배를 받게 되는 사업자의 시장가치(또는 평가가치)가 8억 위안 이상이고, 해당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 매출액이 글로벌 매출액의 1/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(위 (i)과 (ii)를 모두 만족), 피합병 또는 인수 대상 사업자의 직전연도 매출액을 묻지 않고 기업결합 신고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.

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, 중국내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것을 선결조건이나 확약사항, 일정 등에서 삭제, 변경 등 고려할 필요 있음).

한편, 과거 규정 및 <기업결합심사규정(2023. 4. 15. 시행)> 중 “상기 제3조의 신고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관련 증거에 의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배제/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, 미신고시 조사를 할 수 있다”는 규정은 신 규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, 중국 경쟁당국은 신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경쟁제한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 재량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거나 미신고한 거래에 대해 조사 및 처벌할 수는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관련 구성원

권대식

변호사

T 86.10.6461.3650

E daeshik.kwon@bkl.co.kr

김경남

외국변호사(중국)

T 86.10.6461.3653

E jingnan.jin@bkl.co.kr